

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교육관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련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연구사업 담당 부회장, 연구사업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전임 위원장의 예우) 전임 위원장은 임기 만료 후 당해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되며, 회의 참석이나 출장 시 임원 처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3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